의안번호	2203470
의 뢰 인	박성민 의원
회 답 일	2024.9.20.
추계번호	24A2432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6조 (계정의 구분)	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에 '해오름산업벨트[1] 지원계정'을 신설	의무규정
	안 제81조의2 (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)	'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'의 세입과 세출 (세입) -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- 회계내 타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- 일시차입금 -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- 그 외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(세출) - 해오름산업벨트지원에 대한 출연·보조, 융자 -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- 회계내 타 계정으로의 전출금 - 그 외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	의무규정

주: 해오름산업벨트란 울산광역시, 경상북도 포항시, 경주시의 관할 구역을 지칭함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81조의2 (해오름산업벨트지원 계정의 세입과 세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❑ 개정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」(의안번호 제3469호)의 의결을 전제로,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에 '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'을 추가하고 동 계정의 세입·세출을 규정하는 것임

❑ 개정안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에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을 신설하고 이를 토대로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을 위한 출연·보조, 융자 사업을 실시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
○ 현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자율계정, 지역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되며, 개정안에 따라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을 신설하는 것은 회계 운용규모 내에서 계정간 변동만 발생하므로 추가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음

○ 다만,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의 세출 사업으로 해오름산업벨트지원을 위한 출연·보조, 융자 사업을 실시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❑ 그러나 현 시점에서 해오름산업벨트지원 관련 사업의 종류·내용, 사업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근거가 부족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모 등 추가 재정소요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태정림	권아영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태정림	02-6788-4652	jitae@nabo.go.kr